

국가대표 지도자, 전담팀 공개채용^[제한경쟁]

1 채용분야(남/여 분리 선발 + 러닝메이트 운영)

분야	인원	주요업무
국가대표 남자팀 지도자	1팀 (감독1명 지도자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관리 ○ 국제대회 참가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수단 운영 ○ 차세대 우수선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훈련 요청 ○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국가대표 여자팀 지도자	1팀 (감독1명 지도자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훈련 참가선수의 훈련일지 작성 ○ 국제대회 참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수단 훈련 지원 ○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 및 운영 지원
국가대표 여자팀 전담팀	전담팀1명	

2 근무형태 및 조건

분야	근무신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월 보수(세전)*
국가대표 지도자 전담팀 트레이너 (기술)	계약직 *겸직가능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국가대표 훈련장소	채용일~ 2028.12.31.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함

[2025-2026 현직 국가대표 지도자 2인이상 팀을 구성할 수 없음]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트레이너 겸직 가능]

겸직자는 국가대표 훈련기간(입촌·촌외·국외훈련 등) 전체 훈련일정 참여가 필수이며, **겸직을 사유로 한 훈련불참은 인정하지 않음**. 전체 일정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선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임 후에도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지도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제26조(강화훈련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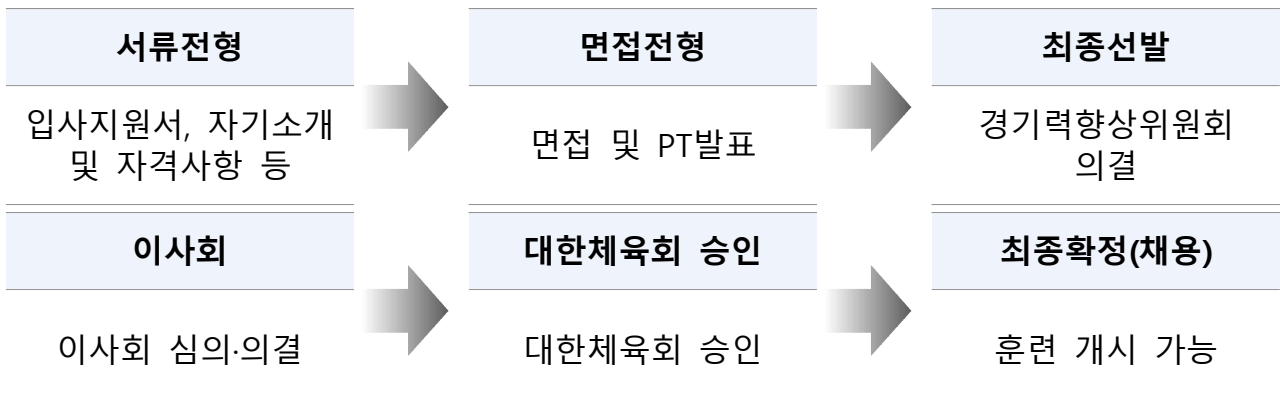
-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강화훈련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외 요청을 한 경우
 2. 강화훈련 참가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및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위반한 자
 - 강화훈련 운영지침 제16조 선수촌 일반수칙 위반 또는 타 종목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집무(훈련)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강화훈련지도자로서의 임무에 태만하거나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3일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자
 - 지도자의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따른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선수촌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 사용을 허용 또는 부추기는 자
 3. 부상으로 인하여 선수촌 외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구분	주요내용
국가대표 지도자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대한복싱협회 정관 제52조(프로 및 유사단체와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5조2항에 해당하는 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p> <p>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 종목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 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div>
국가대표 지도자 (코치)	<p>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대한복싱협회 정관 제52조(프로 및 유사단체와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5조3항에 해당하는 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p> <p>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 종목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div>

구분		주요내용
전담팀 트레이너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대한복싱협회 정관 제52조(프로 및 유사단체와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6조에 해당 하는 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국가대표 전담팀의 자격)</p> <p>① 해당없음</p> <p>② 트레이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 30조의제6항제4호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분야별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갖춘 자로 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선발하도록 권장한다.</p>

4 전형절차

* 일정은 국제대회 및 사무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채용일정

구분	전형별 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p>10. 12.(월) ~ 12. 02.(수) 12:00(정오)</p> <p>[서류 합격자발표: 12. 03.(목)]</p> <p>※개별통보 예정</p>
면접전형	<p>면접 일 : 12. 04.(금)</p> <p>장 소 : 올림픽회관 내 회의실</p> <p>※ 사무처 일정에 따라 면접일은 변동 될 수 있음</p> <p>[최종 합격자발표: 이사회 심의·의결 이후 발표 예정]</p> <p>※개별통보 예정</p>
정식채용	대한체육회 승인 이후 정식 채용

나. 전형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① 전형별 평가방법			
채용분야	전형	• (선발인원) 각 1팀(남/여) •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 등 평가	
국가대표 지도자 (감독 /코치 /전담팀)	서류전형 (적/부 평가)	구 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감독)	○ 필수자격 충족여부 확인 - 필수자격증: 전문스포츠지도사(2급이상) - 필수자격사항: 지도경력 5년이상 - 필수제출서류: 협회제공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지도경력/실적증명서
		자격요건 확인 (코치)	○ 필수자격 충족여부 확인 - 필수자격증: 전문스포츠지도사(2급이상) - 필수자격사항: 지도경력 2년이상 - 필수제출서류: 협회제공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지도경력/실적증명서
	자격요건 확인 (전담팀)	○ 필수자격 충족여부 확인 - 필수자격증: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2급이상) - 필수자격사항: 지도경력 2년이상 - 필수제출서류: 협회제공 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지도경력/실적증명서	
			* 발표자료 서류제출시 필수제출(koreaboxing@sports.or.kr)
	면접전형	• (일자/장소) 12월 04일 금요일 / 올림픽회관 내 회의실 * 정확한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발표주제) Road to 2028 LA 올림픽(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기준) 선수단 운영계획, 종목 이해도, PT발표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3개 항목 평가 (선수단운영40점, 복싱이해도20점, PT40점, 총점 100점 만점) • (동점자처리기준) 선수단운영 - PT - 복싱이해도 순 고득점자	
	최종합격	• (최종확정) 자격 검증 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확정 • (최종승인) 이사회 검토 후, 대한체육회 승인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① 공통(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서는 이메일 (koreaboxing@sports.or.kr)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후 확인메일 회신 예정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증빙서류 모두 제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및 방법			
트레이너(전담팀)			
원서접수 [26.10.12.(월) ~ 26.12.0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사지원서(대한복싱협회 양식) ※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 채용분야(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 필수자격증, 지도경력/실적증명서, 필수제출서류(협회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 발표자료(주제: Road to 2028 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12.02.(수) 12:00(정오)까지 메일 제출 (koreaboxing@sports.or.kr) 	입사지원
면접당일 [26.12.0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본제시 사본제출 	입사지원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대한체육회 제출서류(추후 제공)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대한복싱협회) 공무원기준 채용신체검사서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본제출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서류접수 시작일(2026.10.12.)을 기준으로 기재

구분	주요업무
응시자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반환 방법	○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비용 개인부담)
채용서류 보관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채용서류 파기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후 진행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야하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메일접수)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복싱협회 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 서류접수결과 **서류평가 인원이 최종선발인원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재공고 예정입니다.** 또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채용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이에,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koreaboxing@sports.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복싱협회 홈페이지(boxing.sports.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전담팀,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6., 2026. 2. 2.>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7. 5.>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대한복싱협회 인사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

제13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0. 다른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 까지 계속 적용된다.]

문의 및 연락처: 한세진 주임[02-420-4253, koreaboxing@sports.or.kr]

2026.10.12.[월]

대 한 복 싱 협 회